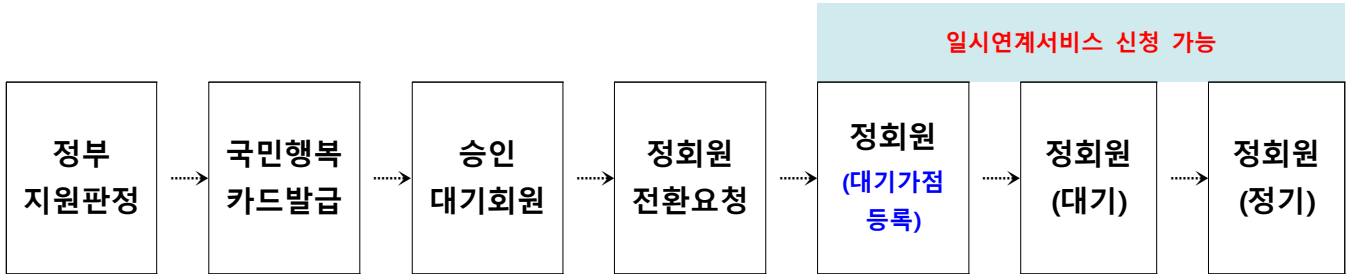


2022년 『아이돌봄 서비스』 이용안내

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



○ 정부지원판정(시간제)

-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
- [가~다] 형: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분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구
- [라] 형: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하는 가구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※ 전액 자부담 이용가정 [라]형은 해당 없음
- ※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, 돌봄 서비스 연계확정 후 정부지원판정 신청

○ 국민행복카드발급

-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납부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등록 필수
- BC카드, 삼성카드, 롯데카드, 신한카드, KB국민카드 중 발급
- 정부지원 신청자 = 홈페이지 가입자 =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동일

○ 승인대기 회원

-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(www.idolbom.go.kr) 회원가입
- 실명인증 및 아동등록

○ 정회원 전환 요청

- 「로그인-서비스 관련 동의서 서명-정회원 전환」 승인 요청
- 신청서 다운로드

(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-정보마당-공지사항-'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신규이용 안내' 첨부파일)

○ 정회원

- 신청서 이메일(ddmi@hanmail.net) 제출
- 마이페이지-정기신청-대기가점 등록

- 대기가점

- 자격 요건에 따른 가점 부여 (해당 시마다 5점 부여)
 - 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
 -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의 자녀
 - ③ 장애부모 가정[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가정(5점), 이외 장애는 (3점)]의 자녀
 -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
 - ⑤ 맞벌이 가정(취업 한부모 포함) 자녀
 - ⑥ 다자녀 가정의 자녀(만 12세 이하 3명, 만 36개월 이하 2명)
 -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상이등급 1급~3급 해당 가정의 자녀
- 대기 1개월마다 가점 1점 부여, 5개월 이상 대기 시 추가 5점의 대기가점 부여
- ※ 정부지원판정이 완료된 가정은 일부 항목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 정회원(대기)

- 서비스이용 희망자는 매달 **11~25일**, 다음 달 이용에 대한 대기 신청
- 「홈페이지-마이페이지-정기이용 대기신청」에서 신청 가능

- ① 연계완료 → 승인 → [정회원(정기)]
- ② 연계불가 → 반려 → 다음달(매달) 정기이용 대기신청 기간에 재신청

- ※ 예) 7월부터 서비스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: 6월 11일~25일 정기이용 대기신청
- ※ 연계 시까지 **매달 정기이용 대기신청**, 미신청 시 다음 달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, 제출한 신청서는 파기 될 수 있음
- ※ 기제출한 신청서와 정기(대기) 신청 내용이 변경될 경우, 센터 연락 또는 메일로 변경된 내용 발송

○ 정회원(정기)

- 아이돌보미 연계 후 시간제, 종일제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
- ※ 비정기 희망시, 일시연계서비스 이용
- ※ 자세한 내용은 시간제·종일제·일시연계서비스 이용 안내 참고

● 모바일앱 설치 및 이용방법 안내 : <https://youtu.be/xBMkKEIwlyQ>

● 공통사항

○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

- ① (아동 1명) 시간당 10,550원, 휴일 및 야간(22:00-06:00) 15,820원
- ② 동시 돌봄 : 아동 2명 25% 할인, 3명 33.3% 할인 적용
- ③ 이용시간 초과 시 30분 단위로 추가 비용 발생
- ④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차등 지원
 - ※ 정부지원 신청 및 문의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문의
 - ※ **종일제 정부지원 적용 시 양육수당은 종료됨으로, 연계확정 후 정부지원판정 신청**
 - ※ 시간제 이용 후 종일제로 전환 시, 사용한 정부지원시간은 차감 후 적용됩니다.
 - 환산 기준 : '시간제 70시간' ↔ '종일제 1개월' 적용

○ 서비스 취소

- 시작시간 기준 **24시간 이내 센터에 취소를 알릴 경우 취소수수료(10,550원) 부과**
- 취소 시 돌봄미 선생님과 사전 연락
- 서비스 취소 방법
 - ① 홈페이지-취소요청
 - ② 홈페이지-1:1 게시판을 통한 취소 요청
- 취소수수료 면제규정 : 돌봄아동의 질병, 사고 발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경우, 질병,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진단서, 처방전 등) 제출

○ 아이돌봄미와 면접 연계

- 가정에서 면접을 희망하실 경우, 돌봄미 선생님과 면접 가능(최대 월 2회)
- 면접진행 시, 면접비(12,000원)가 발생되며 이는 돌봄미 선생님께 직접 전달
- 면접 이후 이용의사 결정

○ 이용요금 결제 안내

-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내 **예치금으로 결제**되며, 서비스일 2일 전 예치금으로 결제
- 예치금 충전

구분	내용	방법
가상계좌 입금	- 입금 즉시 충전 완료, 안내받은 계좌로 24시간 이내 입금 - 요청금액과 입금 금액, 예금주명 일치해야 충전 가능	가상계좌, 카드결제, 돌봄페이 중 선택1
카드결제	- 1-2일 경과 후 예치금 자동 충전 - 즉시 신청을 원할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예치금 충전	
돌봄페이	- 실시간 결제 및 적립 - KB국민은행 계좌(개설) 필요	

- **예치금 잔액이 -30만원일 경우 이용이 제한됨으로 신청 전 예치금 확인**
- 미납 건이 있는 경우 예치금이 충전되면 해당 예치금으로 미납금이 즉시 결제

○ 시간제 이용 안내

- ① 대상: 만 3개월 ~ 만 12세 이하 아동
- ② 이용시간: (기본) 1회 2시간 이상, 30분 단위로 신청 가능
 - 2022년 기준 시간제 가, 나 다형의 정부지원 시간 : 연 840시간
 -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
- ③ 제공서비스
 - 등·하원서비스, 식사·간식 챙겨주기, 놀이활동, 안전·신변보호처리 등
 - 병원 동행은 가능하나, 병원 내 돌봄은 불가
 - 가사활동(세탁, 청소, 조리 등), 전문학습교육은 서비스 내용에 해당되지 않음
 - 따라서 아동의 식사는 조리된 음식으로 준비

○ 종일제 이용 안내

- ① 대상: 만 3개월 ~ 만 36개월 미만 아동
- ② 이용시간: (기본) 1회 3시간 이상, 30분 단위로 신청 가능
 -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시간~200시간 이내
 - 종일제 정부지원 적용 시 양육수당은 종료
- ③ 제공서비스
 - 이유식 먹이기, 젓병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
 - 병원 동행은 가능하나, 병원 내 돌봄은 불가
 - 가사활동(세탁, 청소 등)은 서비스 내용에 해당되지 않음
 - ※ 아동의 식사는 조리된 음식으로 준비
- ④ 종일제의 경우 1개월 단위의 계약으로 이루어짐
 - 종일제 계약 이후 월 중간에 이용 중단과 이용요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음
 - ※ 이용자의 주소 이전, 돌보미 활동 불가 등 불가피한 상황 제외
 - 종료시점이 정해지시면, 돌보미 선생님과 센터에 각각 연락 필요

● 이용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

○ 서비스 이용제한

① 1개월간 이용제한 사유

- 사전통지 없이(10일 전)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3건 이상
-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
-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3회 이상
-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3회 이상
-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
(단, 면책금(취수수료의 2배)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)
- 3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
-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
(서비스 제공범위외의 내용요구,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제공 요구 등)
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

② 6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

-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3회 이상

③ 1년 이내 이용제한 사유

-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폭언, 폭행, 성폭력, 성추행,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(기소유예 등 포함) 시
-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3회 이상 시

④ 기타 이용제한 사유

- 미납금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즉시 이용제한
※ 미납금 납부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

○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

- 소득판별, 취업증빙,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
-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
-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

● 기타 안내 사항

-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대상자로 신고될 수 있는 보호자인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.

동대문구 가족센터